

## 2026년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공고

다수의 노인을 고용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6년 7월 8일  
보건복지부 장관

### I. 공모개요

#### □ 목적

- 지정기간이 종료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추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을 재지정하여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(개선)모범사례 확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

#### □ 추진근거
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<sup>1)</sup>
  - 제13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)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 - 제8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지정 기준 등)
  - 제9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지정 절차 등)
- 2026년 노인친화기업·기관 운영안내

1) 이하, “노인일자리법” 이라고 함

## □ 신청 대상

- (지원대상) 최근 3년(2023~2025년)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\*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공모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\* 2018~2020년 지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정상 종료된 기업

### < 신청 자격 요건 >

#### [법인형태] ※ 아래 열거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
-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·조합
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#### [기본요건] 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(사업운영기간) 사업운영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기준)
- (매출액)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(전년도 재무제표 기준)
- (상시근로자수)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\* 5명 이상  
\*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(A01) 수 등
- (노인고용)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, 고용한 노인이 **5명** 이상  
※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, 임원, 감사 제외
- (신규 노인 고용 의무) 재지정된 해(지정연도)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**10명**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여야 함  
※ 신규 노인고용 인정기준: 재지정 이후 신규 고용한 노인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(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필수), 공모 신청 당시 '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'에 포함된 기(既)고용 노인은 실적에서 제외

#### [추진성과] 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(고용목표 달성) 과거 지정기간 중 고용목표 인원의 합 대비 실제 신규 고용 실적의 합이 100% 이상일 것
- (인건비 누적지급액) 과거 지정기간 중 노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누적지급액이 보조금 지원액 이상일 것
- 지정기간 중 '경고' 처분 이력이 없을 것

○ (공모참여 제한)
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,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,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,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
  - 부도,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
  -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
  - 휴·폐업 중인 경우
 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사회보험료 미납,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  -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(경영상)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
  - 법인의 대표나 임·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·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,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
  -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,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
- ※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, 지정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

## II. 세부내용

### □ 기업 지원사항

#### ○ (보조금 지원) 개소당 최대 5천만원\*

\* 2026년 노인친화기업·기관 운영안내에 따라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(개선), 노인 근로자 안전 관리 비용 등으로 집행

#### ○ (재지정 기업 수) 0개소

#### ○ (기타 지원사항)

- 기술 지원, 상품 사업화,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
- 인사·노무, 세무·회계,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
-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·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
- 우수 노인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
- 정부 입찰 참여 가점\* 지원

\* 조달청 일반용역,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: 1.25점

- 기타 정부 인증제도 가점 부여\*

\* 여가친화기업 인증 가점 1점,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(Best HRD) 인증 (대기업, 중소기업, 선취업후학습 기업 부문)가점 3점

### □ 사업 운영기준

#### ○ (관리기간) 재지정연도를 제외하고 + 5년 (재지정공고일~2031.12.31.)

#### ○ (고용목표 달성) 재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이행

※ 고용인원 산정 기준: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, 건강·고용·산재 보험 가입 필수

#### ○ (사업 운영 및 관리 기준) 2026년 노인친화기업·기관 운영안내 적용

#### ○ (기타사항) 재지정 사업 기간 동안 신규 고용 노인에게 지급한 누적 인건비 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여야 함

□ 추진일정

○ (신청기간) 공고일 ~ 7. 15.(수) 18시까지

※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구분	주요 내용	추진 일정
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건복지부(한국노인인력개발원) 사업공고</li> <li>•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</li> </ul>	공고일 ~ 7. 15.
예비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격 심사 등 진행</li> <li>* (내용) 참여자격 및 기업 안정성 등 전반 검토</li> </ul>	~ 7. 17.
선정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 선정위원회 심사</li> <li>* (대상) 예비심사를 통해 적격여부가 검증된 기업</li> <li>* (방법)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서면 심의 추진</li> </ul>	~ 7월3주차
공모 선정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</li> <li>* 보건복지부 : 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www.mohw.go.kr</a></li> <li>* 한국노인인력개발원 : <a href="http://www.kordi.or.kr">www.kordi.or.kr</a></li> </ul>	~ 8. 7.
이행계약체결 보조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기업 대표(담당자) 기본 교육</li> <li>* (내용) 사업이해, 경영관리(회계·노무·법률)</li> <li>• 이행계약 체결</li> <li>• 보조금 신청 및 지원</li> </ul>	8월중 9월초

### III. 공모 신청방법

□ 제출서류 ※ 서식 모음 (별첨) 참조

구분	제출서류
<p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신청인 제출 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모 지원 신청서 (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 신청서) ※ 신청서 內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포함되어 있음</li> <li>• 신청기업(기관) 서약서</li> <li>• 사업계획서</li> <li>•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(법인) 현황</li> <li>- 신용정보 조회·제공 및 활용 동의서</li> <li>-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*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(상시근로자·근로자 수, 노인 고용 인원 수)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•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관리인력(전문인력)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(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-급여내역서, 소득세 자료 등) 제출 필수</li> <li>※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(조성)에 필요한 시설투자,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(견적서, 가격 조사 자료 등)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접수일 기준) ※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, 기 고용 노인 확인 대상자 이외 일반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</li> <li>• 기업 정관</li> <li>•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</li> </ul>
<p>업무담당자 (한국노인인력개발원) 확인사항</p> <hr/> <p>행정정보 공동이용 (e하나로민원) 활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등록증명 1부</li> <li>•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</li> <li>•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</li> <li>•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</li> <li>•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</li> <li>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) 1부</li> </ul>

※ 공모 지원 신청서에 포함된 "행정정보 공동이용"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,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

□ 신청방법

○ (접수기간) 공고일 ~ 7.15.(수)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

○ (제출방법) 이메일 제출

○ (제출처) 18337128@kordi.or.kr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**PDF 파일 형태로 제출(파일별 암호화 필수)**

※ **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'산업재해율 확인서'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필수**

○ (관련문의)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

< 공모 및 사업계획 컨설팅 문의 >

권역	제출처	연락처	대표번호	담당자
서울·강원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승례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	02-6329-6921 02-6329-6922	1833-7128	경영 컨설턴트
부산·울산 경남	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3층	070-4372-3061 070-4372-3066		
대구·경북	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	070-4736-7093 070-7875-2477		
경기·인천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승례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	02-6329-6923 02-6329-6924		
광주·전남 전북·제주	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	062-714-1293 062-525-5782		
대전·충남 충북·세종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	042-719-1380 042-719-1387		

※ 대표번호 이용 시 발신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영컨설턴트에게 자동 연결

**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**

## IV. 심사절차

### □ 심사절차

- (심사방법)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
- (심사항목) 정량평가(60%) + 정성평가(40%) + 가점(최대5점)
- (선정기준)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
- (평가지표) ※ 세부내용 참고2 참조
  - (정량) 고용목표 달성도(15), 지원금 대비 인건비 누적지급률(15), 기업 재무건전성(20), 지정 이후 고령자 증가율(10)
  - (정성) 사업 내용(고용창출효과, 노인 업무 적합성,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)(20), 사업 효과성(고용창출 효과,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,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등)(20)

## V. 기타사항

- 본 공고에 따라 재지정된 기업(기관)은 노인일자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함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업(기관)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- 선정기관은 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” 및 “노인친화기업·기관 운영 안내”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
- 추가 질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(☎1833-7128)로 문의

<참고 1>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(안)

<참고 2> 심사기준 및 지표 안내

<참고 3> 노인친화기업·기관 예산편성 기준

## 참고1

#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(안)

-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\*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·설치, 출입로·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
  - \* 편의시설이란,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,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)
-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(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)
-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(도배장판 등 마감공사) 가능
- 60세 이상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

구분	내용
신체 부담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 대차 제공</li><li>◦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</li><li>◦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</li></ul>
보조기구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근력 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 운반 기구 제공</li><li>◦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</li></ul>
사고 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작업발판, 안전난간, 미끄럼방지 공사, 추락 방지망,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</li><li>◦ 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</li><li>◦ 경고표시판 설치</li><li>◦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</li><li>◦ 혹한·혹서기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</li>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, 60세 이상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실시</li><li>◦ PC,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</li></ul>

## 참고2

##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

### □ 평가 지표

○ (정량)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(총 60점)

심사영역	지표	배점
사업 추진 성과 (60)	<p>• 고용목표 달성도</p> <p>산출식 = <math>\frac{\text{관리기간 중 고용 실적의 합}}{\text{관리기간 중 이행계약서상 고용 목표 인원의 합}} \times 100</math></p> <p>* [15점] 200% 초과, [13점] 160%이상~200%미만, [11점] 120%이상~160%미만, [9점] 100%이상~120%미만</p>	15
	<p>• 지원금 대비 인건비 누적 지급률</p> <p>산출식 = <math>\frac{\text{지정기간 중 신규 고용 인원에게 지급한 인건비}}{\text{지원금 총액}} \times 100</math></p> <p>* [15점] 200%초과, [13점] 160%이상~200%미만, [11점] 120%이상~160%미만, [9점] 100%이상~120%미만</p>	15
	<p>• (기업 재무 건전성) 부채비율</p> <p>- 산출식 : (전년도말 부채총계×100÷자본총계)</p> <p>* [5점] 80%미만, [4점] 80%이상~100%미만, [3점] 100%이상~130%미만, [2점] 130%이상</p>	5
	<p>• (기업 재무 건전성) 유동비율</p> <p>- 산출식 : (전년도말 유동자산×100)÷유동부채)</p> <p>* [5점] 150%이상, [4점] 100%이상~150%미만, [3점] 50%이상~100%미만, [2점] 50%미만</p>	5
	<p>• (기업 재무 건전성) 매출액 증가율</p> <p>- 산출식 : (당기매출액-전기매출액) *100/전기매출액)</p> <p>* [5점] 20% 이상, [4점] 10%이상~20%미만, [3점] 3%이상~10%미만, [2점] 3%미만</p>	5
	<p>• (기업 재무 건전성) 매출액 영업이익률</p> <p>- 산출식 : 전년도 (영업이익*100)/매출액</p> <p>* [5점] 9%이상, [4점] 6%이상~9%미만, [3점] 3%이상~6%미만, [2점] 3%미만</p>	5
	<p>• 지정 이후 고령자 고용 증가율</p> <p>산출식 = <math>\frac{\text{(2025년말 노인 고용인원 수 - 직전 지정기간 공모 당시 제출한 노인 고용인원 수)}}{\text{직전 지정기간 공모 당시 제출한 노인 고용인원 수}} \times 100</math></p> <p>* [10점] 100%이상, [8점] 60%이상~100%미만, [6점] 20%이상~60%미만, [4점] 0이상~20%미만 [0점] 0이하</p>	10
	<b>정량평가 합계</b>	

○ (정성)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 효과성(총 40점)

심사영역	지표	배점								
사업 계획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사업내용 적합성</b> ※ 사업의 타당성, 구체성,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양호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7점</td> <td>5점</td> <td>3점</td> <td>1점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양호	미흡	7점	5점	3점	1점	7
	탁월	우수	양호	미흡						
	7점	5점	3점	1점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노인업무 적합성</b> ※ 노동강도, 기술난이도, 대인관계 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양호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7점</td> <td>5점</td> <td>3점</td> <td>1점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양호	미흡	7점	5점	3점	1점	7	
탁월	우수	양호	미흡							
7점	5점	3점	1점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</b> ※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, 사업수요의 지속성, 업계전망 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양호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6점</td> <td>4점</td> <td>2점</td> <td>0점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양호	미흡	6점	4점	2점	0점	6	
탁월	우수	양호	미흡							
6점	4점	2점	0점							
사업 효과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노인일자리 창출 효과</b> ※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,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양호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7점</td> <td>5점</td> <td>3점</td> <td>1점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양호	미흡	7점	5점	3점	1점	7
	탁월	우수	양호	미흡						
	7점	5점	3점	1점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</b> ※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례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, 고령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양호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7점</td> <td>5점</td> <td>3점</td> <td>1점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양호	미흡	7점	5점	3점	1점	7	
탁월	우수	양호	미흡							
7점	5점	3점	1점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효과</b> ※ 사회문제해결,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양호</td> <td>미흡</td> </tr> <tr> <td>6점</td> <td>4점</td> <td>2점</td> <td>0점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양호	미흡	6점	4점	2점	0점	6	
탁월	우수	양호	미흡							
6점	4점	2점	0점							
<b>합 계</b>		<b>40</b>								

○ (가·감점)

심사항목	지표	배점
가점 (최대 5점)	• <b>최근 2년 이내 정년연장기업</b>	3점
	• <b>아래 인증자격 취득한 기업(기관) * 유효기간 내</b>	건당 1점
	- 건강친화인증 기업·기관(보건복지부)	
	-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(고용노동부,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)	
	- 가족친화인증 기업·기관(성평등가족부)	
	- 여가친화인증 기업·기관(문화체육관광부)	
	-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(고용노동부)	
감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현장점검 위반사항 행정조치 처분 여부</b> (1회당 각 감점 시행, 위반조치 3회 시 감점 3회 시행) ※ 행정적 시정 : -1점, 주의 : -3점</li> </ul>	최대 3점

※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

### 참고3

## 노인친화기업 · 기관 예산 편성 기준

비목	세목	세세목
인건비 ※ 예산총액의 30% 이내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(관리)인력 인건비</li> <li>※ 보조금 월 200만원,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</li> </ul>
사업비	시설투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, 감정료 등</li> </ul>
	자산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(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,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)</li> <li>※ 차량 임차(리스)는 지양하며, 취득 권장</li> <li>※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</li> </ul>
	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(월세)</li> <li>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,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(리스)</li> <li>※ 보증금,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·사용 불가</li> </ul>
	교육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(안전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)</li> <li>자체교육 강사료</li> <li>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</li> </ul>
	홍보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문, 방송,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(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)</li> </ul>
	사업비성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</li> <li>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</li> <li>※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</li> </ul>
관리 운영비 ※ 예산총액의 10% 이내	여비(국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</li> </ul>
	공공요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, 수도, 통신료 등 공공요금 ※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</li> </ul>
	기타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모성 비품 및 집기</li> <li>사업추진을 위한 내/외부 회의비</li> <li>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</li> </ul>